

2021년도 연구개발활성화 사업 스타트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시행 공고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천 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형 창업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 내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관내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 · 주관기관 단독 수행 가능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관내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참여기관 : 관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 상세기준은 하단 '지원내용' 참조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과제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주제 · 인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중점 지원 분야 해당시 가점 부여(2점)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분야(상세 기술분류는 첨부자료 '기술분류표 참조' <li style="padding-left: 20px;">①DNA(Data·Network·AI), ②미래모빌리티, ③바이오·뷰티·헬스케어, ④로봇·제조혁신, ⑤환경기술(대기·물관리)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 4. 30(약 5.5개월)
민 간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부담금(현금+현물)은 총 사업비의 20%(중소기업)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현금부담
기 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2014. 10. 1. 이후 창업) 인천 내 소재 창업기업이면서 2020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미만 기업

※ 상세 내용은 “3. 신청 자격” 확인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1년), 1개 과제

※ 주관기관 단독 수행 가능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현물)

-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최대 50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0% 이상) 중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신청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구분	지원금 (A)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합계(B=C+D)	현금(C)	현물(D)	
조건	시지원금 ≤ (총사업비×80%)	민간부담금 ≥(총사업비×20%)	민간부담 현금 ≥ (민간부담금×10%)		
금액	50,000,000	12,500,000	1,250,000	11,250,000	62,500,000
비중	80%	20%	2%	18%	100%

3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21. 10. 6.)’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신청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미만(2014. 10. 1. 이후 창업)인 인천 소재 창업기업*

수행기관별		자 격 요건
주관기업	인천 소재	①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또는 운영
		②접수마감일(2021. 10. 29) 기준 인천 내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참고2] 참조)
참여기관	기업	인천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개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역 소재 제한 없음.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1] 창업여부 확인 방법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 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공통사항

○ (상한제도 적용)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 제한

○ (연구총량제 적용) 책임자의 최소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미만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수행기관)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주관기관) 총사업비(현금)의 51% 이상 사용

- (성과지표 설정) 연구성과 성과지표 중 의무지표의 경우 성과목표(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별 최소 1개 이상 목표 지표설정
- (사전 중복성 검토) 주관기관은 기존 사업을 검토하여 신청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참여제한 여부 검토) 선정 후 수행기관 및 책임자는 사업 신청 시 제재(또는 참여제한) 정보 검색결과를 제출해야 함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지원 제외

- 사업공고일 현재 설립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2021년도 인천 연구개발활성화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신성장동력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이거나 상기 사업을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기업(기업만 해당함)
- 내역사업별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및 기관 등
-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전산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과제선정에 따른 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포함된 경우
 - 이행보증보험 발급불가 기업 등

4

가점부여 사항

가점 항목 ※ 최대 6점 부여

-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점
- 연구참여자 여성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3점(참여연구원 5인 이상에 한함)
- 청년(만 39세 이하) 창업자 : 2점
- 구매조건부(거래처 구매확약서 제출) 과제 : 3점
- 인천 연구개발활성화 사업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해당시 : 2점
 - ①DNA(Data·Network·AI), ②미래모빌리티, ③바이오·뷰티·헬스케어,
 - ④로봇·제조혁신, ⑤환경기술(대기·물관리)
 -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분야(상세 기술분류는 첨부자료 '기술분류표 참조')
-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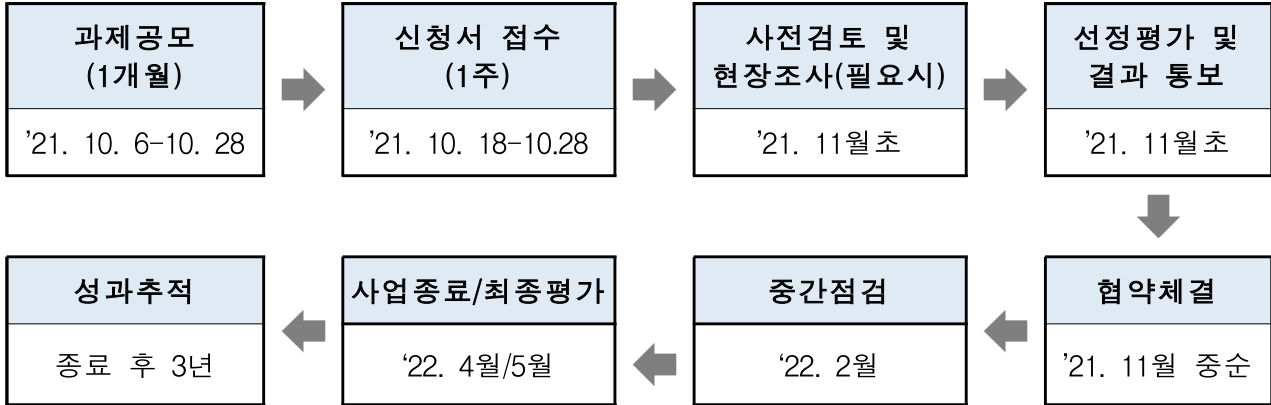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1인	2인 이상
배 점	2점	3점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 3점

과학기술상 수상	수상자 참여
배 점	3점(1회에 한함)

5

추진일정



※ 상기 추진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6

평가방법

□ 평가방법(발표평가)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과제중복성, 제재사항 등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점수
목표 및 필요성	제안된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	10점
	개발의 필요성	10점
기술성 (30점)	개발 기술의 혁신성	15점
	국내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5점
	기존 기술과의 특허 회피 가능성	10점
목표달성 가능성	개발 기술의 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사업화 가능성	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업화가능성,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 등	20점
합 계		100

※ 상기 선정평가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상 변경 가능, 가산점 별도

7

제출서류

제출서류(8~13번 서류는 '증빙서류'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No	제 출 서 류 명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1부	
2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조회 동의서	1부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1부	
5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작성시 해당금액 활용계획을 명시	1부	
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해당시 제출
7	사업자등록증	1부	
8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1부	기업만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만 제출
10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 받은 기업	1부	
1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 확인서 (NTIS 발급)	1부	
12	가점항목 증빙서류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1부	해당시 제출
13	개발코자 하는 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출원사실 증명원	1부	해당시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8

신청방법 및 문의처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10. 28.(목) 16:00까지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Bizok시스템 (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신청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및 bizok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되, 주관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업로드할 것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정책팀 유광민 책임연구원	TEL : 032-260-0761 E-mail : gmyoo@itp.or.kr
----------------------------	--

※ 붙임(아래)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지원제외 업종

※ 서식파일

- 서식1. 사업계획서(서식)
- 서식2.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3. 개인정보 이용 및 조회 동의서
- 서식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 서식5.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약서

※ 부록

1. 산업기술분류표
2. 인천 연구개발활성화 신성장동력 5대 분야 산업기술분류 코드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분야별 성능지표(예시)

붙임1

창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개정 시행령 ('20. 10. 8)	
상속/증여	공동 (개인, 법인)	동종업종 유지		창업 아님	
		이종업종 창업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창업	
창업이력 없음	공동 (개인, 법인)	-		창업	
창업 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이내	창업 아님
				부도/파산 후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후 2년 이내	창업 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 최대주주		창업 아님
		조직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 아님
			이종업종 변경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창업 아님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후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	창업

※ 창업 범위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1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0-91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	96999